

第3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月14日(金) 11時48分

議事日程

1. 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3面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3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千相旭議員 外 5人 發議) 3面

(11時48分 開議)

○議長 李斗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21名 中 출석의원 17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議員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난 '93년 12月30日字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그동안 수고하신 金東勳 區廳長께서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으로 영전하시고 대신 성동구구청장으로 재임하시던 尹斗榮 區廳長님께서 종로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럼 區廳長의 인사 말씀을 우선 듣기로 하겠습니다.

○區廳長 尹斗榮 지난 해 12月30日字로 부임한 종로구청장 尹斗榮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議長님! 芮相浩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새해 처음 개최하는 第34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로는 600년 서울 역사의 중심지이면서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학창시절을 이 지역에서 보내는 동안 많은 추억과 정을 간직한 고향과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다른

어느때 보다는 여러 議員님을 모시고 22만 종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더 큰 보람으로 느낌과 아울러 종로구를 중심가답게 더욱 살기 좋고 번영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는 의정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議員님들의 금지와 자부심으로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복지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며 이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잘 알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면서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서울을 세계속에 알리는 한국 방문의 해로써 서울의 중심지인 우리 종로구가 모든 면에서 앞장서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고 보다 밝고 건강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알뜰히 보살피고 정성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가지 구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저의 구정 방향은議長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를 열어가는 새

종로 건설에 두고 주요 시책사업인 생활개혁사업과 서울600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활기찬 도심 생활권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개혁사업의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의 추방과 교통거리 위락 풍속 등 4대 질서 운동의 본격 추진,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국민 건강 유해식품의 근절, 불법 부당요금의 근절,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과 무허가건물의 단속 등 일상 생활 주변의 재반 불편과 부당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삶의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600년 사업으로써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고 종로의 모습을 문화의 고장답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 문화재 주변의 도로공사 등 문화재 관리와 보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문화 공간의 확충, 역사 문화 재현사업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종로 문화 육성과 시민 화합을 보다 굳건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심 생활권 조성으로써議員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서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사업 등 도심 기반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버스 전용차선의 확대 실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화, 도심 노상주차장의 감축, 동네 주차장 확충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시민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안전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현안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명가, 명품 거리의 조성과 낙후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을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 공원 및 녹지 부흥, 체육 공원 확충, 지역복지 시설의 확충,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방향에 대하여 우리 區議會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중

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區廳長 이하 1700여 저희 직원과 22만 區民이 한마음 한가지가 되어 알찬 시정, 보람찬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여러 議員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尹斗榮 區廳長! 수고하셨습니다.

區廳에서 업무가 바쁘실테니까 직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역시 작년 12月30日字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던 金根培 事務局長이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지금까지 성북구 재무국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서울시 관내 22개 區중에서 가장 엘리트층의 엘리트인 金東勳 區廳長께서 각별하게 우리 현재의 朴洙徹 局長님을 우리 區議會 事務局長으로 후임케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수철 사무국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事務局長 朴洙徹 1月30日字 서울특별시 인사에 의해 가지고 종로구의회 事務局長으로 일하게 된 朴洙徹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을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議員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事務局長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朴洙徹 事務局長 보고드리겠습니다.

千相旭議員 외 5人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4년 1月7日 李炯述議員 외 7人의 議員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議長 提議)

(11時54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친 '94년 1월14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기히 여러 議員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議長 提議)

(11時54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역시 순위에 따라 朴勸先議員과 田永泰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의를 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종결을 짓고 난 다음에 점심을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우리 議事係長이 별도로 여러 議員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약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副議長 芮相浩 議長님께서 용무가 계시기고 제가 대리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사회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千相旭議員 外 5人 發議)

○副議長 芮相浩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會 李萬魯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李萬魯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萬魯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994년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議長님 이하 同僚 議員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4회 임시회에 우리 議員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千相旭議員 外 5人の 議員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동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運營委員會 委員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이제까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副議長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의하였는데 다수 위원의 반대로 부결되어 현행대로 개정하지 않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현재의 위원이 선임이 될 때까지 재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으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없는 의원들 간의 경미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나 우리 의원들 간의 신분과 관련된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기에 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손쉽게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 운영을 신속하고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협의에 관한 사항만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할 때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개정(안)

역시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運營委員會에서 심사한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4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월 10일 천상욱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1994년 1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3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1994년 1월 14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천상욱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각종 의정 활동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의정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원 간에 경미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의원 신분 상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지 않는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의원 관련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4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상

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수정, 부의장을 상임위원이 될 수 있게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을 10인으로 하고

- 제3조 제2항 제1호에 “라” 목을 신설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관련사항에 관하여 협의케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 자치구의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의안 심사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회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중 도시건설위원회 9인을 10인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경중과 양 및 형평을 고려하여 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민행정부위원회 11인을 12인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설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이 아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의 구체성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한 것은 특정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 본 조례 개정으로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의결을 뜻하는 것인지 단순 협의로 끝나는지 여부가 애매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의 관계 역시 애매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원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규

정에 의한 의원 개인적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의회에서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의안의 예비심사 기능인 운영위원회 협의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동조례 제5조 단서 조항 신설은 의회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 중 “각 의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사 존중 차원과, 원활한 의정 방향에서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개정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없음

5. 討論 要旨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의원 관련사항에 관한 협의사항만 제외하여 수정하자(정창희 의원)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은 개정안대로 채택하자(정창희 의원)

○제2조와 제4조는 원조례대로 두자(심재득 의원)

○제10조는 원래 조례안대로 두자(정창희 의원)

6. 修正案 要旨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한다.

라. 제7조 제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7. 審査結果: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要旨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원래의 조례대로 두자(전영태 의원)

제10조는 개정안대로 통과하자(심재득 의원)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

○副議長 芮相浩 李萬魯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運營委員會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時40分 閉會)

○出席議員 18名

李斗鶴	李憲九	鄭命浩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李萬魯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芮相浩	朴禹信	朴勸先
田永泰	金憲中	金成贊

○關係公務員

區廳長	尹斗榮
副區廳長	諸他龍
總務局長	洪起和
財務局長	李來昶
市民局長	吳炳漢
都市整備局長	尹泌
建設局長	林東國
保健所長	李星世

